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대상 지원금 등 차별 금지 명시 및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장애인 대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부과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5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대상 지원금 등 차별금지 명시	2
2.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장애인 대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5.

다. 회 부 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대상 지원금 등 차별금지 명시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로 “장애”를 추가하고, 차별금지 대상에 기존의 단말기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u>나이</u>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u>지급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32조의12(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 ① ----- ----- ----- <u>나이, 장애 또는</u> ----- ----- ----- <u>지급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
-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고급화 및 통신기술(5G 등)의 발달 등으로 고가의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이 적은 지원금으로 고가의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고가의 요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발생 규모 및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의 경우 피해 발생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의 기만이나 부당한 압박 하에 작성된 형식적 동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 취소 등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지원금의 지급과 단말기 및 요금제의 제공·판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의 부당·차별적 판매 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장애”란 사전적으로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현행법은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정신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함.

- 참고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분²⁾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과의 중복 여부 및 현행 제도의 혼선 발생 가능성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은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사유로 이미 이용자의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장애”를 법문에 병렬하여 명시할 경우 그 의미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행법상 표현인 “신체적 조건”의 표현을 “장애”로 대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의미가 중복되는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가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체적 조건”의 의미에 “장애”를 포함하고, 우대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37조의13(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①법 제32조의1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과 관련한 사항
2. 이용자의 나이에 관련된 사항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인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소외계층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둘째, 개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이용자를 제한·배제·분리·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추가될 경우 법문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장애” 외에도 “거주지역”이나 “나이”를 이유로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분리하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특히,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청년·시니어 요금제 등도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요금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이용자의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표현 대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 개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려는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나, 이미 현행법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를 금지³⁾하고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별도 입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 **SK텔레콤**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의 차별금지는 이미 현행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중복 입법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KT**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장애를 이유로 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한·배제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도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별도 장애인 차별금지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LG유플러스**는 현행 조항의 “신체적 조건”은 “장애”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장애”를 별도로 중복하여 추가할 필요가 적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정당한 사유 없는 역무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중복의 소지가 높다는 입장임.
-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 규정과의 중복 우려 및 운영상 혼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한 자구 수정 필요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이해관계자의 중복입법

3)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려로 인한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장애인 대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5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장애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및 이용요금에 관한 혼동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이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하고,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설명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③ 단말기 할부기간과 추가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⁴⁾하고 있으나, 복잡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의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인이 장애인에 대한 기망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고비용 요금제를 계약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인과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구입비용,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잡한 이동통신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과도한 재산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행법상 ‘이용자’가 당연히 장애인을 포섭한다는 점에서 이를 달리 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요금제 복잡성과 지원금 지급 관련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고하고 불완전판매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보수단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법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해관계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는 강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벌칙·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로 보임.

- 만약, 벌칙·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도입할 경우, 법 문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장애인에 대한 설명 대상으로 명시한 단말기 구입비용, 서비스 이용요금 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조건 외에 “중요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둘째,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SK텔레콤**은 개정안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현행법이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의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를 금지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KT**는 개정안의 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의무의 경우,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 현행법이 이미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요사항 미고지 금지를 규정하는 점, 유통 현장에서의 불명확한 지침으로 인한 혼란, 이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용자와 분쟁, 장애인 별도 취급으로 인한 역차별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LG유플러스는 현장에서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 경우 장애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미 이통사는 중요사항 고지 의무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어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 의무 규정 필요성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종합해보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동통신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 마련 여부 및 법문의 명확성과 입법 실익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